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81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오세희 · 박희승 · 맹성규
채현일 · 위성곤 · 박수현
박균택 · 서영교 · 전진숙
안태준 · 한정애 · 허성무
이주희 · 최혁진 · 이춘석
이용우 · 김원이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관련해 매출기준을 회피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함.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용·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7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기준 회피 여부 등, 결제단말기 분리·공용 여부 및 실질 판매자와 결제 수취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사용·결제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기준 회피 여부 등, 결제단말기 분리·공용 여부 및 실질 판매자와 결제 수취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사용·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의5제1항 중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를 “대규모점포등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생략) ③·④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기준 회피 여부 등, 결제단말 기 분리·공용 여부 및 실질 판매자와 결제 수취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사용·결제 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u>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 ----- ----- ----- -----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② (생략)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기준 회피 여부 등, 결제단말기 분리·공용 여부 및 실질 판매자와 결제 수취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사용·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등과-----

-----.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